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499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원고, 피항소인(탈퇴) 1. 주식회사 [redacted]은행

원고, 피항소인 2. 주식회사 [redacted]은행

3. 주식회사 [redacted]은행

4.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5. 주식회사 [redacted]은행

6. 주식회사 [redacted]은행

7. 주식회사 [redacted]은행

8. 주식회사 [redacted]은행

9. 주식회사 [redacted]은행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승계참가인

[redacted]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1. [redacted]국

2. [redacted]시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가합58771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2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판 결 선 고 2017. 4. 20.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탈퇴한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 제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redacted]국은 [redacted]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3979호로 공탁한 705,934,733원 중 60,393,656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승계참가인 [redacted] 유한회사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redacted]시는 [redacted]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3977호로 공탁한 422,612,820원 중 36,155,089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승계참가인 [redacted] 유한회사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탈퇴한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 제외)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과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승계참가인 [redacted] 유한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redacted]국은 [redacted]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금제13979호로 공탁한 705,934,733원 중 60,393,656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승계참가인 [redacted] 유한회사(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16,104,975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53,683,250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13,420,812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85,893,199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26,841,625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20,131,219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20,131,219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107,366,499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redacted]시는 [redacted]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3977호로 공탁한 422,612,820원 중 36,155,089원은 승계참가인에게, 9,641,357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32,137,857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8,034,464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1,420,571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16,068,929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12,051,697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12,051,696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64,275,714원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등기

1) 주식회사 [redacted]씨(이하 '[redacted]씨'라 한다)는 2008. 6. 24. [redacted]신탁주식회사(이하 '[redacted]신탁'이라 한다)와 [redacted]씨 소유의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대 567.5㎡외 54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고 한다)를 [redacted]신탁에 신탁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4개동을 신축하여 신탁재산인 위 토지와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redacted]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추가하여 체결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redacted]씨는 2008. 6. 26.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redacted]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redacted]씨의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1) 원고들을 포함한 14개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1]은 2008. 6. 26. [redacted]씨에게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그 담보로 [redacted]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에 대하여 공동4순위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세부내역은 별지2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공탁금 안분내역' 중 질권자 및 질권설

---

1)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이 [redacted]씨에게 대출을 하고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원고4는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에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정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2016. 3. 24. 승계참가인에게 [redacted]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그에 대한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16. 6. 2. [redacted]씨에게 이러한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redacted]씨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1) 피고 [redacted]시는 2009. 2. 23. [redacted]씨에 대한 주민세, 취득세 등 25건 합계 66,0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가 [redacted]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또한 피고 [redacted]시는 2014. 6. 24. 재산세 19건 합계 422,612,820원 상당의 조세채권(별지3의 2.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번)의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가 [redacted]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2) 피고 [redacted]민국(소관: 동[redacted]세무서)은 2011. 4. 7. [redacted]씨에 대한 2008. 1.분 부가가치세 804,270원(별지3의 1. 국세 항목 중 연번 1번), 2008. 7.분 부가가치세 390,380원(별지3의 1. 국세 항목 중 연번 2번) 및 2010. 6.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별지3의 1. 국세 항목 중 연번 3번, 다만 압류 당시의 가산금은 8,791,530원이었다)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① [redacted]씨가 [redacted]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과 이 사건 신탁토지가 매도될 경우의 매도대금 지급청구권 및 ②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시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재산 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

3) [redacted]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은 별지3 '[redacted]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라. [redacted]신탁의 공탁

1) [redacted]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2014. 4.경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처분·정산하고 4순위의 수익권 질권자들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2]에게 해당 수익금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 [redacted]국은 [redacted]씨의 2014. 6. 27.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705,934,733원[3]이, 피고 [redacted]시는 [redacted]씨의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원이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이 사건 신탁토지의 처분대금 정산시 우선수익자나 그 질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체납액의 우선 지급을 요구하였다.

2) 이에 [redacted]신탁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①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3979호로 705,934,733원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redacted]국을 피공탁자로 하여(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년 금제13977호로 422,612,820원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redacted]시를 피공탁자로 하여(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탁'이라고 한다) 각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공탁 당시 주식회사 [redacted]축은행, 주식회사 [redacted]축은행,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질권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여 피공탁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으나, 이후 위 저축은행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질권부 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공탁자 지위는 위 저축은행들에 이전되었다.

3) 별지3의 1. 국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6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인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고,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별개의 절차여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인 압류채권자에게만 채무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어 압류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양도와의 경합 등의 사유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인 [redacted]신탁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redacted]신탁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를 처분한 대금을 정산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redacted]씨의 조세채권자인 피고들과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 사이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비용의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급순서 및 그에 대한 권리 여부, 처분대금의 귀속 및 수익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redacted]신탁 주식회사로서는 피고들이 우선 지급을 요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redacted]씨의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위 질권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의 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피고들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원고들의 질권설정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의 목적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2008. 6. 24. [redacted]씨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은 사실, 피고 [redacted]국이 [redacted]신탁에 우선 지급을 요구한 종합소득세의 각 법정기일은 2010. 11. 16. 또는 그 이후이고, 피고 [redacted]시가 우선 지급을 요구한 재산세의 각 법정기일은 2009. 7. 10. 또는 그 이후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이 피고들의 위 각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4)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각 질권설정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2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내역' 중 제1, 2공탁금 안분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안분내역의 원고별 기재 금액에 관하여 정당한 출급청구권자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해세 우선지급 주장

가) 피고들은 [redacted]씨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로서 그 성립 시기나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원고들의 질권에 우선하므로, [redacted]신탁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토지의 처분대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4]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신탁의 목적을 원

4) 구 신탁법(2011. 7. 29.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873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신탁대상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2008. 6. 26. [redacted]신탁 명의로 2008. 6. 24.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redacted]국은 2011. 4. 7. [redacted]씨에 대한 2010. 6.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을 포함한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동영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redacted]시는 2014. 6. 24. 재산세 합계 422,612,820원의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신탁토지나 그 매각대금을 직접 압류한 사실이 없으며,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도 수탁자인 [redacted]신탁이 아닌 위탁자인 [redacted]씨이므로, 위 조세채권이 모두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수탁자 소유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그 조세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에 의한 우선 지급 주장

가)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를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이나 신탁수익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는 이 사건 신탁토지로 인하여 위탁자인 [redacted]씨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세도 포함되므로, 피고들의 동영디엔씨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들의 질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redacted]시는, 설령 피고 [redacted]시가 [redacted]신탁에게 [redacted]씨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redacted]씨는 수탁자인 [redacted]신탁에게 위 특약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redacted]씨에게 부과된 조세를 납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redacted]씨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redacted]씨의 조세채권자로서 위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 위탁자인 [redacted]씨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포함되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탁계약 제19조 및 특약 제12조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위탁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제7조는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를 위탁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위탁자인 [redacted]씨가 부담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더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5]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6]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는 이 사건 신탁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redacted]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금만 포함되고, 위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6) 이후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였는데, 그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정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 위탁자인 [redacted]씨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특약 규정은 자금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제 비용의 지급순서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redacted]신탁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redacted]씨에게 이 사건 신탁토지의 처분대금 등에서 위 조세 등을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피고들에 대하여 [redacted]씨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조세채무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특약을 [redacted]신탁이 피고들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상당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탁금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redacted]씨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redacted]신탁에 대하여 [redacted]씨에게 부과된 조세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신탁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redacted]신탁에 대하여 자신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redacted]씨의 조세 상당액 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피고 [redacted]시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redacted]국의 기타 주장

가) 피고 [redacted]국은,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질권자는 국세징수법 제34조에 따라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피고 [redacted]국이 질권자인 원고들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34조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의 효력과 그에 따른 압류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질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redacted]씨의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위 질권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들 보다 우선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인 [redacted]씨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체납처분으로는 수탁자 소유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그 조세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redacted]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redacted]시의 기타 주장

가) 피고 [redacted]시는, [redacted]씨가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 중에는 그 법정기일이 원고들의 질권설정일 이전인 취득세, 주민세 및 면허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redacted]시의 조세채권이 원고들의 질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redacted]시가 동영디엔씨에 대한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에는 법정기일이 2008. 1. 10.인 취득세, 주민세 및 면허세를 비롯하여 그 법정기일이 원고들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서는 조세(별지3의 2. 지방세 항목 중 연번 24 내지 34번)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조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조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세금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00. 6. 23. 선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98다34812 판결 참조), 피고 [redacted]시가 별지3의 2.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 기재 합계 422,612,820원의 재산세의 체납처분으로 [redacted]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redacted]씨에 대한 위 취득세 등이 포함된 66,0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는 2009. 2. 23.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이며, [redacted]신탁도 이 사건 제2공탁에서 위 재산세 체납액 상당액인 422,612,820원만을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 [redacted]시는 위 66,097,680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들의 질권 설정일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공탁금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 [redacted]시는 원고들의 질권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질권설정계약서에 제3채무자인 [redacted]신탁의 동의를 받아 2008. 6. 27.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redacted]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승계참가인은, 2016. 3. 24.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으로부터 [redacted]씨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그에 관한 모든 담보권 및 그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원고를 승계참가하고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원고에 대한 안분액 상당의 출급청구권이 승계참가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이 2016. 3. 24. 승계참가인에게 [redacted]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그에 대한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16. 6. 2. [redacted]씨에게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승계참가인은 대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의 목적이었던 수익권의 변제를 위하여 공탁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출급청구권도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이 법원에서 탈퇴한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게 안분되어야 하는 60,393,656원과 36,155,089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승계참가인은 위 각 금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승계참가 및 탈퇴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경진

판사 김수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별지1]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제13조 (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갑(동영디엔씨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그러나 을([redacted] 신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 (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또는 해지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6조 (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 설정)

①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 비용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 금리를 적용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

제3조 (신탁재산의 인도 및 계약의 효력)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즉시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를 을로 한(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발생한다.

제7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제8조 (질권자) 본 계약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질권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제 비용의 지급순서)

① 자금 및 분양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을의 단독계좌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 및 정산하되, 을은 후순위자금의 집행 및 정산이 긴급할 경우 선순위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을 보류하거나 집행 및 정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을의 대지급금
2. 을이 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고유계정차입금 이자
3. 설계비, 감리비 및 분양광고비 등 사업진행경비(국공유지 등 매입비용 포함)
4. 공사비(총공사비의 80%)
5. 을의 신탁회사의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
6. 민원처리 및 사업진행관련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
7. 잔여 공사비
8.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
9. 신탁수익의 지급

③ 전항 제9호와 관련하여 신탁수익의 발생이 확정적이고, 신탁사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상의 질권자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신탁수익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7호의 잔여공사비는 분양율을 감안하여 입주잔금 입금시 제2항의 1호 내지 6호의 자금지급이 가능하고,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는 경우, 제2항 5호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갑은 상기 ②항 9호의 신탁수익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삼화저축은행의 지급동의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제세공과금의 납부)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법인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보존등기의 비용, 제세공과금 등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은 금액의 추가납부를 위하여 갑 및 수익자의 신탁이익의 일정부분을 을이 판단하여 유보할 수 있다.

③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 및 수익자가 납부하거나 갑의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 종료전이라도 을은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간을 정하여 갑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최고(2회) 한 후 최고기간(발송일로부터 회당 14일) 만료 시까지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다.

1. 특약사항 제23조에 해당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시
3. 을을 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을이 본 계약상의 갑의 주소지로 서면통지하면 이는 갑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갑은 신탁부동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8조(처분대금 정산)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우선으로 공제한 후 특약사항 제11조에 의하여 정산한다.

1. 비용: 을의 투입금 일체와 투입금에 대하여 정산 시까지 을의 내규에 의한 이자포함
2. 보수: 본 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처분 시까지의 기수납 보수와 처분대금의 0.8%에 해당하는 금액
3. 채무: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조건부 감리계약, 조건부 설계계약 등)으로 발생된 채무 및 을이 사업주체로서 부담한(할) 각종 비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별지2]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공탁금 안분내역

연번	질권자	질권설정액(원)(㉮)	제1공탁금 안분내역[7](원)	제2공탁금 안분내역[8](원)	비고
1	㈜[redacted]은행	10,400,000,000	107,366,499	64,275,714	
2	㈜[redacted]은행	3,250,000,000	33,552,031	20,086,161	
3	㈜[redacted]은행	5,850,000,000	60,393,656	36,155,089	원고(탈퇴)
4	㈜[redacted]은행	3,250,000,000	33,552,031	20,086,161	
5	㈜[redacted]은행	5,850,000,000	60,393,656	36,155,089	
6	㈜평[redacted]은행	1,560,000,000	16,104,975	9,641,357	원고2
7	㈜[redacted]은행	5,200,000,000	53,683,250	32,137,857	원고3
8	㈜[redacted]은행	6,500,000,000	67,104,062	40,172,321	
9	㈜[redacted]은행	1,300,000,000	13,420,812	8,034,464	원고4
10	㈜[redacted]은행	8,320,000,000	85,893,199	51,420,571	원고5
11	㈜[redacted]은행	2,600,000,000	26,841,625	16,068,929	원고6
12	㈜인[redacted]은행	1,950,000,000	20,131,219	12,051,697	원고7
13	㈜[redacted]은행	1,950,000,000	20,131,219	12,051,696	원고8
14	㈜[redacted]은행	10,400,000,000	107,366,499	64,275,714	원고9
합계		68,380,000,000(㉯)	705,934,733	422,612,820	

7) 계산식= 이 사건 제1공탁금 705,934,733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단,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원 미만 금액이 더 많은 연번 3, 5, 6, 7, 11, 12, 13은 원 미만을 올림함)

8) 계산식= 이 사건 제2공탁금 422,612,820원×㉮/㉯ (단,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원 미만 금액이 더 많은 연번 2, 4, 11, 12은 원 미만을 올림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별지3]

[redacted]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1. 국세

순번	세목	귀속연도	법정기일	체납세액(원)	본세(원)		가산금(원)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1	부가가치세	2008년 1월분	2010.2.1.	804,270	780,850	0	23,420
2	부가가치세	2008년 7월분	2010.2.1.	390,380	379,010	0	11,370
3	종합부동산세	2010년 6월분	2010.11.16.	233,109,130	111,004,490	22,200,890	99,903,750
4	종합부동산세	2011년 6월분	2011.11.16.	217,124,530	111,004,490	22,200,890	83,919,150
5	종합부동산세	2012년 6월분	2012.11.16.	200,397,290	111,480,751	22,296,150	66,620,390
6	종합부동산세	2013년 6월분	2013.11.16.	182,371,550	113,246,220	22,649,240	46,476,090
합계				834,197,150	447,895,811	89,347,170	296,954,1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2. 지방세

연번	세목명	과세이유물건	부관액(본세)	가산금계	합계	법정기일
1	구)재산세(건축물)	[redacted]	390,520	11,700	402,220	2008-07-10
2	구)재산세(건축물)		6,428,810	655,630	7,084,440	2008-07-10
3	구)재산세(건축물)		403,170	12,080	415,250	2009-07-10
4	구)재산세(건축물)		5,560,570	3,769,150	9,329,720	2009-07-10
5	구)재산세(건축물)		403,170	12,080	415,250	2010-07-10
6	구)재산세(건축물)		4,060,060	2,167,180	6,227,240	2010-07-10
7	구)재산세(건축물)		5,656,510	3,019,800	8,676,310	2010-07-10
8	구)재산세(토지)		36,085,130	2,814,540	38,899,670	2008-09-10
9	구)재산세(토지)		303,000	183,330	486,330	2008-09-10
10	구)재산세(토지)		32,572,880	15,048,490	47,621,370	2009-09-10
11	구)재산세(토지)		64,024,230	21,895,990	85,920,220	2010-09-10
12	재산세(건축물)		413,920	115,720	529,640	2011-07-10
13	재산세(건축물)		4,186,660	1,532,020	5,718,680	2011-07-10
14	재산세(건축물)		5,840,370	2,136,880	7,977,250	2011-07-10
15	재산세(건축물)		405,780	73,700	479,480	2012-07-10
16	재산세(건축물)		4,211,390	985,170	5,196,560	2012-07-10
17	재산세(건축물)		5,871,140	1,373,420	7,244,560	2012-07-10
18	재산세(건축물)		380,000	11,380	391,380	2013-07-10
19	재산세(건축물)		4,018,710	343,640	4,362,350	2013-07-10
20	재산세(건축물)		5,725,330	515,250	6,240,580	2013-07-10
21	재산세(토지)		64,024,230	11,908,360	75,932,590	2011-09-10
22	재산세(토지)		65,173,520	14,468,310	79,641,830	2012-09-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9

23	재산세(토지)	[redacted]	65,940,540	4,352,020	70,292,560	2013-09-10
소계1			382,079,640	87,405,840	469,485,480	
24	주민세(특별징수)		93,430	2,800	96,230	2008-01-10
25	면허세(일반)		36,000	1,080	37,080	2008-01-10
26	구)취득세(부동산)		9,728,570	1,565,410	11,293,980	2008-01-10
27	구)취득세(부동산)		1,014,230	694,020	1,708,250	2008-01-10
28	구)취득세(부동산)		683,990	468,110	1,152,100	2008-01-10
29	구)취득세(부동산)		310,790	9,310	320,100	2008-01-10
30	구)취득세(부동산)		4,240,270	2,902,200	7,142,470	2008-01-10
31	주민세(특별징수)		93,430	2,800	96,230	2008-02-10
32	주민세(특별징수)		93,430	2,800	96,230	2008-03-10
33	주민세(특별징수)		80,440	2,410	82,850	2008-04-10
34	주민세(특별징수)		33,000	990	33,990	2008-04-10
소계2			16,407,580	5,651,930	22,059,510	
35	구)재산세(건축물)		6,890	190	7,080	2008-07-10
36	구)재산세(건축물)		29,890	860	30,750	2008-07-10
37	주민세(특별징수)		52,170	1,560	53,730	2008-08-10
38	주민세(법인균등)		62,500	1,870	64,370	2008-08-10
39	주민세(특별징수)		54,040	1,620	55,660	2008-09-10
40	주민세(특별징수)		54,040	1,620	55,660	2008-11-10
41	주민세(특별징수)		54,040	1,620	55,660	2008-12-10
42	주민세(특별징수)		54,040	1,620	55,660	2009-01-10
43	면허세(일반)		18,000	540	18,540	2009-01-10